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7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이종욱 · 이성권 · 배준영
윤한홍 · 박성민 · 엄태영
조승환 · 송언석 · 김정재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서비스·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유통·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이하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라 한다)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영리를 목적으로 제5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